

학생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학생이 교내의 생활을 통해서 항상 준비해야 할 사항 및 학생단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학생은 따로 이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학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증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적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규제서식)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증은 가로8.5cm 세로5.4cm 크기로 한다.
2. 제1면은 학교로고, 사진, 소속학과, 학번, 성명, 바코드를 기재하여 신분증으로의 기능을 한다.
3. 제2면은 은행카드의 기능을 한다.

제5조(발급권자) 학생증은 총장명의로 발급한다.

제6조(발급) 입학수속을 마친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학생증을 교부받아 졸업시까지 사용한다.

제7조(등록) 학생은 학생증에 등록을 완료한 학기의 등록 확인을 입학홍보처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한 학생은 그 유효 기간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21.7.22.>

제8조(휴대의무) ① 학생은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는 자는 시험, 도서관 이용, 기타 교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한 때에는 학생처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입학홍보처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1.7.22.>

제10조(재발급절차) 학생증의 분실,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발급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생증재발급신청서를 입학홍보처에 제출한다.<개정 2021.7.22.>
2. 입학홍보처는 학생증재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재발급 한다.<개정 2021.7.22.>
3. 학생증 재발급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제11조(학생증반납) 제적, 졸업생의 학생증은 입학홍보처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제3장 학생활동

제12조(단체의 조직) ① 학생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초(3월)에 단체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입학홍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② 학칙 제45조에 의거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단체의 등록 및 활동을 일체 금한다.

③ 기타 학생단체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허가) 전조에 의하여 신청한 단체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활동기간 재등록) ① 학생단체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속 활동을 희망할 때에는 매 학년도 초(3월)에 소정의 심의를 거쳐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등록신청이 없는 단체는 해산한 것으로 한다.

③ 신규학생 단체는 1년간 가 등록하여야 하며, 가 등록기간 중 학칙 및 관계규정을 위반 할 때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제15조(변경신고) 등록된 학생단체의 규칙 및 기타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지도교수의 승인 후 입학홍보처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7.22.>

제16조(활동금지기간) 학생의 단체활동은 정기시험 7일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는 할 수 없다.

제17조(허가취소) 각 학생단체의 활동이 그 목적에 위배되거나 학칙 및 준칙 또는 제 규정에 위배되거나 본교의 품위를 손상 또는 교내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그 단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집회·게시·인쇄물 배포

제18조(집회신고) 본교 학생단체 행사 또는 집회 및 결사는 집회신고서(소정양식)을 사전에 입학홍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학생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7.22.>

제19조(집회허가)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집회 및 결사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입학홍보처에 신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7.22.>

제20조(광고물 허가) 교·내외의 학생 광고,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홍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 세칙 및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21.7.22.>

제21조(게시물 게재) 허가된 광고 또는 게시물(간판, 프랭카드 포함)은 교학지원처장의 검인을 받고, 게시 장소와 게시 시간을 지정 받은 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게재자가 게재기간 종료시 책임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21.7.22.>

제22조(외부게시물) 본교 내에 외부기관 또는 개인광고게시 인쇄물 배포시 원안을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개정 2021.7.22.>

제5장 행사참여

제23조(교내행사)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행사 참석이 전체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학생은 일체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24조(교외행사) ① 학과별 학술 강연, 운동경기 기타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장은 교학지원처를 경유 교학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상 실시하는 교외교육실습 및 견학 등은 소속 학부(과)장이 교학지원처를 경유 교학지원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없는 방학기간중의 교외교육, 견학 등은 소속학부(과)장이 교학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대외행사금지) 정기시험 기간 중에는 일체의 대외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행사의 중요성으로 행사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참가할 수 있다.

제6장 학적부 기재변경

제26조(변경) 학적부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정정원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변경
2. 생년월일 변경
3. 본적지 변경
4. 주민등록 변경

제7장 보칙

제27조(예의) 학생은 교내·외의 생활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일반사회인의 모범인이 되어야 하며, 학생상호간은 물론 교직원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인격의 존중과 품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9조(개정) 이 준칙의 개정은 입학홍보처장,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제안으로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7.22.>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